

◇주요내용

가. 이동수련의 절차 및 방법(제6조)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이동수련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은 수련병원 등의 장은 해당 전공의가 소속을 옮겨 수련을 받을 다른 수련병원 등의 장 및 해당 전공의의 동의를 얻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요청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알려야 함.

나. 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제2호)

전공의에 대한 폭행 및 폭언 등의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및 전공의의 이동수련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7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9983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29811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이 조부터 제22조까지”를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1조 및 제22조”로 한다.

대통령령 제29811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조의2의 개정규정 중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응시 자격) 한약업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교육부장관이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한의원이나 한약업소에서 한약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다목부터 터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퍼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8조제1항제2호의2”를 “법 제98조제1항제2호의3”으로 한다.

다. 법 제20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8조제1항제2호의2	50	75	100
--------------------------------------	----------------	----	----	-----

대통령령 제29811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3 제2호다목부터 허목까지의 개정규정을 각각 라목부터 고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 제20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8조제1항제2호의2	50	75	100
부 칙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9811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약사 또는 한의사가 약국을 개설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면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6250호, 2019. 1. 15. 공포, 7. 16. 시행)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5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7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장 박능후

●**대통령령 제29984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조제1호다목”을 “제4조제1호마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14조 중 “폐, 췌장”을 “췌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손 또는 팔을”을 “손·팔 또는 발·다리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7조제3항”을 “법 제37조제4항”으로 한다.

제29조의2제2항제6호 중 “장제비·진료비 및 위로금 등”을 “장제비·진료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0조제6항”을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관리와 같은 조 제6항”으로 한다.

제29조의3을 제29조의4로 하고,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